

#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58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2005. 9. 28.  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소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조정(안 제2조)

- 소액 부정수 기준 (건당) : 600원 ⇒ 2,000원
-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: 인근 유사토지의 농지소득금액의 5/100  
⇒ 토지가격의 1/100

나. 소하천점용허가수수료 징수규정 신설(안 제3조제3항)

다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(안 제1조·제3조·제5조 등)

-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 
⇒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
- 토석·사력 ⇒ 토석·모래·자갈
- 월할 계산 ⇒ 매 1월을 1/12년

라.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점용료 감면기준 보완(안 제3조)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2005. 8. 18 ~9. 7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##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

제1조중 “소하천정비법”을 “「소하천정비법」”으로 하고, “토석·사력”을 “토석·모래·자갈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600원”을 “2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중 “지가공시및토지  
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”을 “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 
법률」 제3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항중 “제10조제2항”을 “제9조제2항”으로,  
같은조 제3항중 “월할계산”을 “매 1월을 1/12년으로”로, “일할계산”을  
“매 1일을 1/365년으로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점용료 등의 감면) ①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  
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.

1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: 100퍼센트
2.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:  
100퍼센트
3. 국가 및 사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 
위한 경우 : 100퍼센트
4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 
납부한 경우 : 100퍼센트
5.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우수점용의 경우 :  
100퍼센트
6.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: 100퍼센트

7.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도로 점용하는 경우 : 100퍼센트

8.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: 100퍼센트

9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·전기통신시설·송유관·가스공급시설·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: 50퍼센트

②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.

1.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: 100퍼센트

2.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: 50퍼센트

3.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: 30퍼센트

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「하천법 시행규칙」 제32조를 준용하며,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제1항과 같다.

제4조제1항 단서중 “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”를 삭제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.

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유수사용, 토지의 점용, 토석·모래·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

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.

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중 “토석·사력”을 “토석·모래·자갈”로 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별표 1의 제2호 산정 기준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란 다목중 “토석·사력”을 “토석·모래·자갈”로 하며, 같은표중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표 제7호 구분란중 “토석·사력”을 “토석·모래·자갈”로 한다.

가.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

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/100

별표 2를 삭제 한다.

별표 3의 500퍼센트 이상란의 납부할 점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년도 점용료 + [전년도 점용료 × {25/100 + (증가율 - 500/100) × 5/1000} ]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·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,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(이하“점용료등”이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----) ----- ----- 토석·모래·자갈 ----- -----</p>
<p>제2조(점용료등의 산정기준) ①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1건의 점용료등이 <u>600원</u>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제2조(-----) ① ----- ----- <u>2,000원</u> ----- -----</p>
<p>②토지가격은 <u>지가공시</u>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.</p>	<p>② ----- <u>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</u> ----- ----- <u>제9조제2항</u> ----- -----</p>
<p>③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<u>매 1월을 1/12년으로</u> ----- ----- <u>매 1일을 1/365년으로</u> ----- -----</p>
<p>④ (생략) ⑤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점용료등의 감면)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	<p>제3조(-----)①----- <u>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: 100퍼센트</u></li> <li>2. <u>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: 100퍼센트</u></li> <li>3. <u>국가 및 사천시장(이하“시장”이하 한다)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: 100퍼센트</u></li> <li>4. <u>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: 100퍼센트</u></li> <li>5. <u>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우수점용의 경우 : 100퍼센트</u></li> <li>6. <u>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: 100퍼센트</u></li> <li>7. <u>농업기반공사가 우수로 점용하는 경우 : 100퍼센트</u></li> <li>8. <u>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: 100퍼센트</u></li> <li>9. <u>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·전기통신시설·송유관·가스공급시설·열 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: 50퍼센트</u></li> </ol> <p>②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: 100퍼센트</u>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 <p>제4조(점용료등의 조정)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·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시기) ① (생 략)  ②토석·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,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2. 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: 50퍼센트</p> <p>3. 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: 30퍼센트</p> <p>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하천법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하며,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제1항과 같다.</p> <p>제4조(-----) ① -----</p> <p>----- 다만,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점용료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.</p> <p>제5조(-----) ① (현행과 같음)  ②유수사용,토지의 점용,토석·모래·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



현행	개정안
<p>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,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 (생략)</p> <p>제7조(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)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·시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,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 &gt;</p>	<p>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-----)① ----- ----- ----- ----- 토석·모래·자갈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해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</p>

[별표 1]

《 현 행 》

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(제2조 관련)

구 분	산 정 기 준
1. 공작물 설치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.)	(생략)
2. 토지(소하천 등 부지)의 점용	<p>가.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<u>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토지 농지소득금액의 5/100</u> 다만, 미 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<u>0.8/100</u>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광업(골재채취를 제외)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  다만, 소하천구역내의 <u>토석·사력</u>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.</p> <p>라. (생략)</p> <p>마. (생략)</p> <p>바. (생략)</p> <p>사. (생략)</p>
3. 하천부속물의 점용	(생략)

구 분	산 정 기 준
4. 유수의 점용	(생략)
5. 지하수의 유수 채취	(생략)
6. <u>배수(주수)</u>	<p>가. <u>공업용수의 배수</u>  <u>제4호 나목의 1/3</u>  <u>※ 월 10,000m<sup>3</sup>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나. <u>기타 용수의 배수</u>  <u>기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</u>  <u>다만,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</u>  <u>배수(주수)는 제외한다.</u>  <u>제4호 나목의 1/4</u>  <u>※ 월 10,000m<sup>3</sup>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</p>
7. <u>토석·사력</u> 의 채취	<p>가. 도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<u>토석·사력</u>  <u>도내가격의 평균치의 15/100</u></p> <p>나. (생략)</p>

구 분	산 정 기 준
<p>8. 죽목, 갈대,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</p> <p>9. 스케이트장, 유선장(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) 풀장, 대기장, 탈의장(매장포함)</p> <p>10. 기타의 점용 및 사용</p>	<p>다. (생략)</p> <p>(생략)</p> <p>(생략)</p> <p>(생략)</p>

[별표 1]

《 개 정 안 》

##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(제2조 관련)

구 분	산 정 기 준
1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	<p>가. ----- ----- <u>토지가격의 1/100</u>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----- ----- ----- <u>토석·모래·자갈</u> ----- -----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(현행과 같음)</p>
3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구 분	산 정 기 준
4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5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6. <삭 제>	<삭 제>
7. <u>토석·모래·자갈의 채취</u>	가. ----- <u>토석·모래·자갈</u> <u>도매</u> ----- 나. (현행과 같음)

구 분	산 정 기 준
	다. (현행과 같음)
8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9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10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[별표 2] < 삭제 >

**점용료 등 감면기준(제3조와 관련)**

감 면 대 상	감 면 율
1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	100%
2.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	100%
3. 국가 및 시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	100%
4.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	100%
5.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	100%
6.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	100%
7.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	100%
8.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	100%



[별표 3]

《 현 행 》  
점용료 등 조정산식 (제4조와 관련)

산출점용료 등의 증가율	납부할 점용료
(생략)	(생략)
(생략)	(생략)
(생략)	(생략)
(생략)	(생략)
(생략)	(생략)
500퍼센트 이상	<u>전년도 점용료 + [전년도 점용료 × 25/100]</u>

[별표 2]

《 개 정 안 》

점용료 등 조정산식 (제4조와 관련)

산출점용료 등의 증가율	납부할 점용료
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500퍼센트 이상	$\text{전년도 점용료} + [ \text{전년도 점용료} \times \{ 25/100 + (\text{증가율} - 500/100) \times 5/1000 \} ]$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◆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
**제3조 (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·평가 및 공시)**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·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·평가하고,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·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)** ①국가·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·사용에 대한 보상
2. 국·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
3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
4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

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(이하 "토지가격비준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,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.

## ◆ 河川法 施行規則

**제32조 (허가수수료)**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04.11.29>

[별표 4]

허가수수료의 기준(제32조관련)

사 항 별	수 수 료 액
1.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 유지·관리에 관한 허가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
2.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가. 공작물의 신축, 개축, 변경 나. 토지의 굴착, 성토,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. 유수의 사용,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·모래·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라. 토지의 점용, 스케이트장, 유선장의 설치, 식물의 재식 및 선박의 운항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 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 점용료의 1/1,000 없음
3.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가.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나.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. 죽목의 재식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 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 없음
4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를 받는 경우	없음

◆ 小河川整備法

**第18條 (公益을 위한 처분)** ①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.

1. 小河川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小河川의 보전 및 災害豫防 등 公益에 대한 被害를 제거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公益事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

②삭제 <1997.12.13>

**第22條 (占用料등의 徵收)** ①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流水 및 土地의 占用料, 土石·모래·자갈 등 小河川産出物의 採取料 등(이하 "占用料등"이라 한다)을 徵收할 수 있다. 다만,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한 者로부터 當해 占用料 등에 상당하는 金額을 不當利得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. 다만,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
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④管理廳은 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경우에 그 工事 또는 그 占有·사용이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것일 때에는 占有料등 또는 許可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.

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占有料등과 不當利得金 및 許可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하며, 그 금액과 徵收方法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占有料등과 許可手數料의 減免對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## ◆ 地方稅法

**제197조 (정의)** 이 절에서 "농업소득"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(이하 이 절에서 "작물"이라 한다)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.[전문개정 2000.12.29]